

서울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3나20328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3나203285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1가합51756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곽병철, 황건수, 손교명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철, 이원근, 김태완

변론 종결 2024. 2. 29.

판결 선고 2024. 3. 2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1가합517563 판결

주문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에 2019. 3. 11. 체결된 500,000,000원, 220,777,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7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2019. 3. 11. 자 500,000,000원, 220,777,000원의 각 금전지급행위를 7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소 중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예비적으로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고, 제2항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12쪽 3 내지 4행의 "J"를 "P"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5쪽 12 내지 13행의 "(이하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라 한다)"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C의 약 50%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C가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다14539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다24799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피고의 배우자 E이 운영한 회사일 뿐 아니라, 피고도 주식 지분 중 49.997%를 소유한 회사인 점, ② 피고는 C에 금전을 대여하기도 하였고, 그 체납 세금에 관하여 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등 그 경영에도 어느 정도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피고의 배우자가 사실상 운영하는 F의 계열회사들의 여러 계좌를 이용하여 11분 사이에 여러 차례의 출금과 송금을 통해 이루어져 그 지급방법이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배우자의 증인진술서를 증거(피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증명력이 제한적이다)로 제출하였을 뿐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변제이익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C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본인의 채무인 반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보증채무에 불과하여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정당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적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554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무이자채무보다는 이자부채무가, 저이율의 채무보다는 고이율의 채무가 변제이익이 많다고 할 것인데,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연 12% 이율의 채무이거나 무이자부채무인 반면, C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연 25% 이율의 채무이어서 C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C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변제이익이 더 크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통모에 의한 변제에 해당함은 충분이 인정되고, 피고에 대한 채무가 변제이익이 더 크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원범

판사이희준

판사김광남